
2023년 대학안전관리계획

2023. 2.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축안전팀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6
1. 재난	6
① 자연재난	6
② 사회재난	8
2. 안전사고	9
① 대학 안전사고	9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6
③ 연구실사고	18
3. 감염병 확산	20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
4. 범죄	25
① 일반범죄	25
② 성범죄	3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34
① 산업재해	34
② 중대재해	41
6. 기타	49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49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51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4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61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5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66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68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69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별도첨부) 》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4.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율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 안전 점검 및 교육 실시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재난사고, 안전사고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전화	053-850-3882	FAX	053-359-6245	홈페이지	www.cu.ac.kr
총장	성한기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성한기 (직책 : 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석·박사)	합계	비고
	11,732	652	12,384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기타	합계
	394	697	51	1,142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②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안전팀	관련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캠퍼스관리팀	총무행정팀 건축안전팀
	사회재난	건축안전팀	총무행정팀 캠퍼스관리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팀	건축안전팀 캠퍼스관리팀
	연구실 사고	건축안전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총무행정팀
	교육시설안전	건축안전팀	캠퍼스관리팀
3. 감염병	코로나 19	보건진료소	총무행정팀 학생지원팀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기숙사 총무행정팀 학생지원팀
	일반범죄	총무행정팀	학생상담센터 학생지원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축안전팀	학생상담센터 총무행정팀 캠퍼스관리팀 정보보호팀
	중대재해처벌법	건축안전팀	기숙사 총무행정팀 캠퍼스관리팀 정보보호팀
6. 기타	비상사태	총무행정팀	기숙사 예비군연대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총장실	총장	성한기	053-850-3001
부총장	부총장	김현기	053-850-3800
교목처	처장	안상호	053-850-3271
교무처	처장	권오영	053-850-3003
교육혁신처	처장	박근서	053-850-3370
학생처	처장	이경아	053-850-3004
진로취업처	처장	김경환	053-850-3999
사무처	처장	정수철	053-850-3005
사무처	부처장	신재동	053-850-3550
기획처	처장	김용찬	053-850-3011
산학협력단	단장	김기홍	053-850-3008
입학처	처장	최동호	053-850-3470
국제처	처장	윤종인	053-850-3007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전산정보팀	팀장	박상수	053-850-2621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캠 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주관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1	0	0	1	0.4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태풍으로 인한 수목 전도(4그루) 발생

- 2019년도 태풍으로 인한 소나무 3그루 전도(인명피해 없음)
- 2021년도 태풍으로 인한 느티나무 1그루 전도(인명피해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시설물유지보수사업	10	10	20	40	
계	10	10	20	4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 없음]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건물유지보수사업	25	30	70	125	
계	25	30	70	125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박성빈	053-850-3962, sbpark@cu.ac.kr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권연숙	053-850-3501, eskwon@cu.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29	39	26	31	7	26.4
재산피해(백만원)	0	0	0	8	0	13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12	19	8	5	2
	계	12	19	8	5	2

□ 원인분석

- KB보험사 조사 결과
 - 교내 이동 중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체육활동 중 신체접촉에 의한 가벼운 골절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 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2023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

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최근 5년간 재난피해 현황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교육시설안전인증	0	80	70	150	
계	0	80	70	150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최근 5년간 재난피해 현황 없음]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예방)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고 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연구활동종사자의 불안정한 행동(연구실 내 취식, 휴대폰 사용)에서부터 기인됨.
 - 따라서 실험실별 적합한 안전 교육 실시 및 연구실 내 안전수칙 준수
 -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직책	대응 방법	비고
연구활동종사자	① 초기대응 및 환자 발생 시, 환자 우선 구출, 유관기관(119) 신고 ②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담당부서에 사고내용 즉시 보고	
연구책임자	① 초기대응 및 환자 발생 시, 환자 우선 구출, 유관기관(119) 신고 ② 안전담당부서에 사고내용 즉시 보고	
안전환경관리자	① 사고현장 출동, 대응 및 연구주체의장 및 과기부에 사고 발생 보고 ② 온라인 연구실사고조사표 작성 후 제출	▪ 1개월 이내 보고
연구주체의 장	① 안전관리위원회(사고대책본부) 비상소집 ② 사고원인 및 경위 조사, 방지대책 강구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사고원인, 경위조사 ▪ 사고처리, 대책수립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안전관리사업	47.5	189.7	167	404.2	
계	47.5	189.7	167	404.2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대학 내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

- 대학 내 손씻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 공공시설 소독 및 청소 등 위생 관리 강화
- 대면 수업시 강의실 등 주기적 환기 강화

(안내 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세정제(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 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감염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 교실 등 창문을 수시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시킴
- 냉난방기 사용시 수시로 환기 실시
- 학교 내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
- 학교 내 공용 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러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거나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함

- 강의 등 교내 활동 중에 37.5도 이상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귀가 조치 후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적극 안내

○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지침

단계	조치사항
1단계	· 유증상자 발생시 보건진료소로 즉시 신고
2단계	· 보건진료소에서 확인 후 귀가 조치 또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3단계	· 유증상자 결과 확인
4단계	· 신속항원검사 결과 상 - 양성 확인 →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안내 - 음성 확인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정상 체온 및 관련 증상 소실된 후 등교하도록 안내

○ 확진자 발생시 대응 지침

단계	조치사항
1단계	· 확진자 본인이 자율(학과, 부서 또는 보건진료소) 보고
2단계	·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TFT 보고
3단계	· 학교 자체 조사 후 접촉자 분류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안내
4단계	·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방역당국 으로부터 확진 통보 를 받은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출근) 중지 · 7일간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2023	합계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소모품 구입)	69	25	4.4	3.6	102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홍보물 구입)	1	0	0	0	1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기구 구입)	27	4	0	0	31	
계	97	29	4.4	3.6	134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이한진	053-850-3556, wicked@c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정성균	053-850-3963, kyun8484@cu.ac.kr	
팀장	학생상담센터	팀장	박성욱	053-850-2579, foco@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김태연	053-850-3355, lailai1718@cu.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대학에서의 근본적인 요인)** 부정적인 관계, 대학생활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대학의 사회적 지원의 결핍, 지역의 범죄와 폭력적 환경, 부모의 통제부족으로 인한 범죄

- 대학 내의 과도한 경쟁, 소외되고 외톨이 상태의 심화와 방치되고 있는 현실

- 저출산에 따른 입시제도의 편에 따른 폭력 증가 가능성
- 학교 구성원 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원인분석

○ 자체 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없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 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 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원상회복”</p> <p>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p>	<p style="text-align: center;">“실질적 참여”</p> <p>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p> <p>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p>
추진 정책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p style="text-align: center;">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팀장	박성욱	053-850-2579, foco@cu.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행정직	김태연	053-850-3355, lailai1718@cu.ac.kr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안수현	053-850-2576, dks0606@cu.ac.kr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김형근	053-850-2577, chaos7696@c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김혜정	053-850-3359, stella1219@cu.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2	5	4	4	2	3.4
	성폭력	1	-	-	1	1	0.6
	계	3	5	4	5	3	4
피해자 수	성희롱	2	5	4	4	5	4
	성폭력	1	-	-	1	1	0.6
	계	3	5	4	5	6	4.6

□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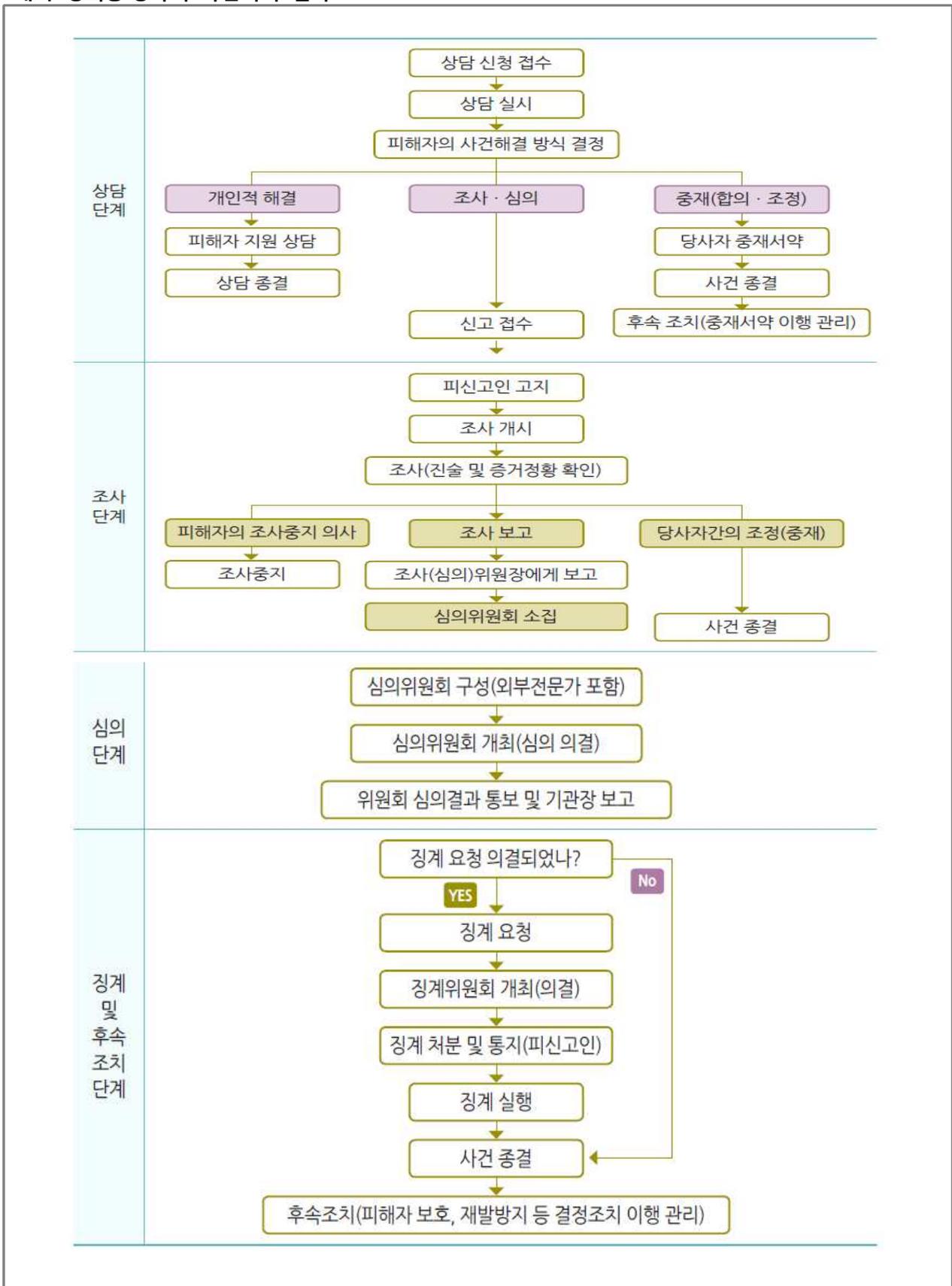
○ 본교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 사건 접수 경향 분석 결과

- 성희롱 사건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피해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성폭력 사건 발생은 적은 수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성평등상담실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 교내 구성원의 안전한 성문화 및 평등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교내 홈페이지, 웹사이트 및 팸플릿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성폭력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더불어, 학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나가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위력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대응) 성고충상담원의 전문 교육 및 심화 교육을 지원하여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성폭력상담소, 경산경찰서 등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최우선으로 조력함.
- (재발방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함.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사건개요	유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유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예방교육 프로그램	5	2.2	5	12.2	
전문가 자문 및 활용	1	0.5	0.5	2	
계	6	2.7	5.5	14.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유정효	053-859-4061, jhyu@cu.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흡·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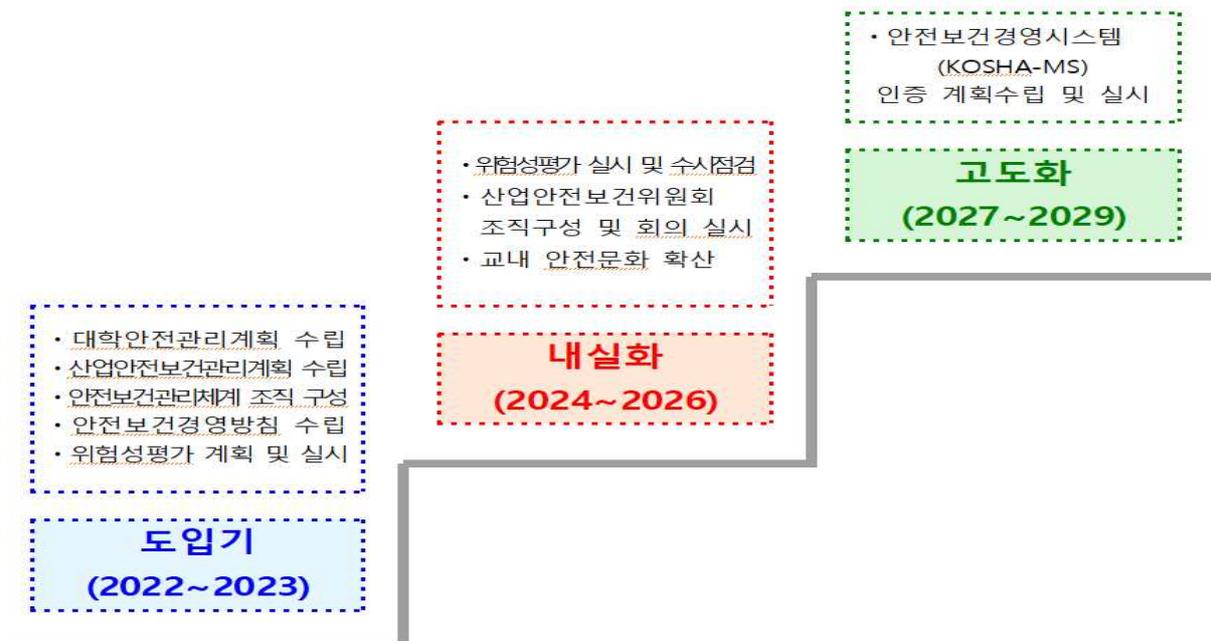
○ 목적

- 우리 대학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 업무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비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현업 업무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식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이 최우선 과제

○ 기본 방향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정책 사항의 적극 이행
 -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지속적인 안전보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사고요인 차단
 - 안전점검의 날,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 안전문화 확산 활동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촉진

○ 안전보건관리체계 로드맵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총장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근무 중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행동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주관
현업 종사자	정기교육	분기 6시간	자체(현장) /온라인교육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8시간(직무배치 전)	자체교육(현장)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작업시작 전)	자체교육(현장)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16시간(해당 종사자)	자체교육(현장)	관리감독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1시간(해당종사자)	자체교육(현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온라인교육 8시간 집체교육 8시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규(최초 1회) 34시간 보수(2년마다) 24시간	집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양성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온라인교육	안전 및 보건관리자 자격 보유 시 면제

- 매월 대상자 파악 후 교육 실시

※ 문서보존 기간 : 3년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매월 4일 안전보건 순회점검 실시
- 교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작업환경을 점검하여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작업 형태, 시설물 등에 대해 유해·위험성 확인
- 협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및 업무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대응
- (점검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시설물, 기계 도구 등 결함 및 작업 특이사항 확인
- (점검방법) 분야별 안전보건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후 점검 결과 자체 보관

○ 취급 유해화학물질 조사 및 사용자 교육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기초자료를 현업종사자에게 제시 및 교육과 동시에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현장 확인을 통한 작업별 관리요령 숙지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존기한(3년)

○ **자율안전확인(KCS)대상 기계 및 유해위험기계기구 확인**

- 현업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정성을 평가하며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 기계·기구 사용자 교육을 통한 위험점 확인 및 작업 방법 숙지
- 점검을 통한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및 현업종사자 안전 확보

○ **위험성 평가**

- 작업환경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수립 및 재해예방을 위함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 수립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위험도 감소
- 면담을 통한 청취조사로 근로자 참여 추진 및 안전의식 제고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용역 시행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확정 및 정보 수집 • 위험성평가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순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가능성, 중대성 추정 •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 결정

허용가능 위험성	위험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허용 가능 위험성인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 실행가능 및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설정 후 조치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장소 및 작업별 내용 취합 • 문서보존 기간(3년)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작업의 유해인을 제거하거나 감소를 위함

사전조사 및 확인	설문조사 및 기계기구 파악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이행	교육 및 서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담작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면담을 통한 작업장 및 작업조건 조사 • 증상 설문 조사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사용법 및 개선사항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존기한(5년)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건강진단 독려	건강진단 실시	결과통보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의 검진 독려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존기한(5년)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선정 및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총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총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총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총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 △(경계심각) 총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총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총장(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총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10	10	
계			10	10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유정호	053-859-4061, jhyu@cu.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 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중대재해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9대 중점과제 이행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우리 대학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여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 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해사고를 사전 예방
- 중대재해 Zero화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 구성원들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현



DCU 안전보건경영방침

우리 학교는 전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근무환경 조성』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적극 이행한다.

1. 안전·보건활동을 최우선으로 이행하며, 전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안전보건 관련 법률·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3. 안전보건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4.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교내에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2023년 2월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성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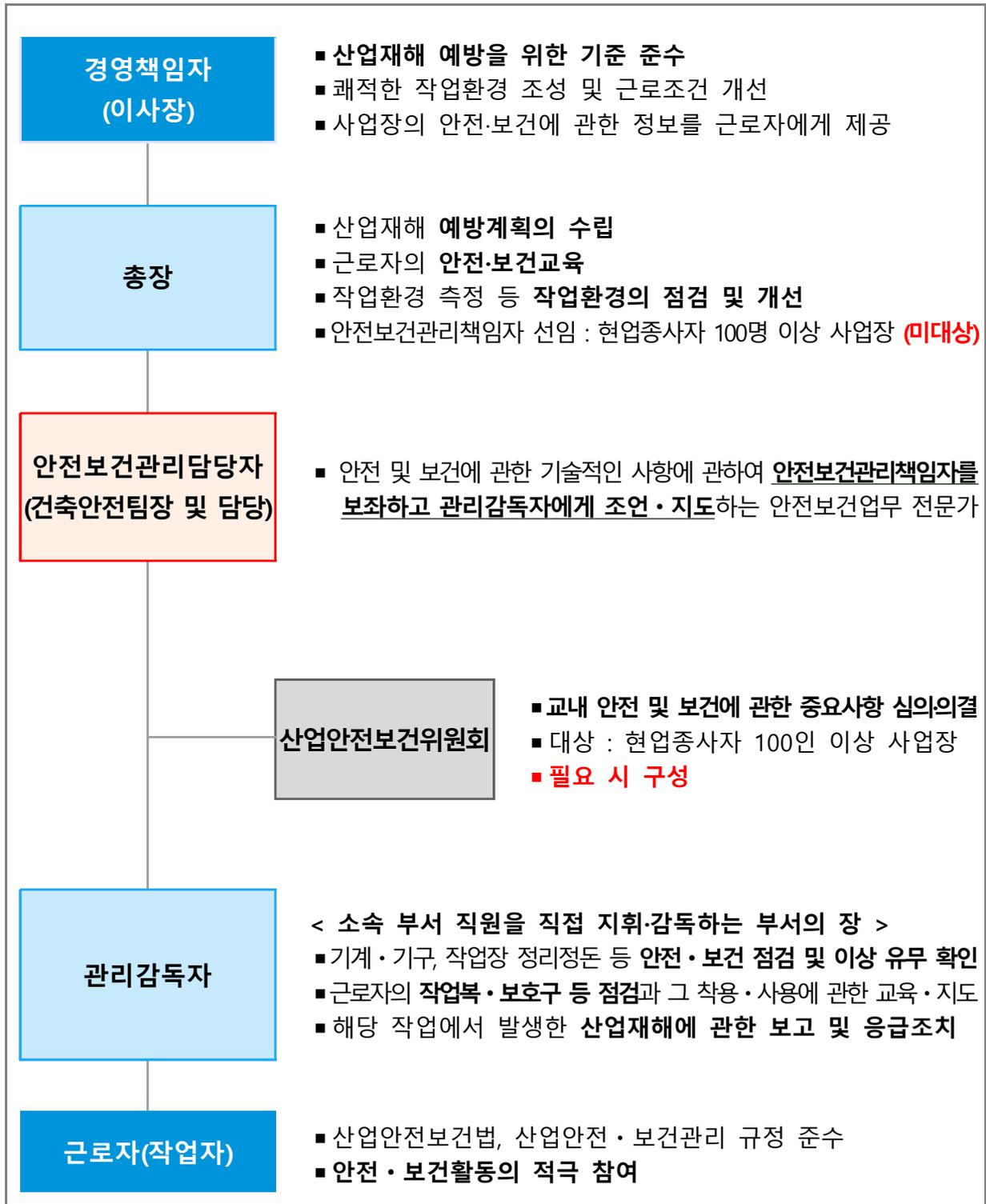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현업종사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되나 상시근로자 수의 관할 범위, 중대재해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축안전팀(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담당부서로 지정·전담조직으로 역할 수행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비대상



3)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보건 순회점검 실시
- 교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작업환경을 점검하여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작업 형태, 시설물 등에 대해 유해·위험성 확인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 수립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위험도 감소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우리 대학 재정 여건에 맞추어 제거·대체·이행 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우리 학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을 통한 권한 부여 및 업무수행 지원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시행령 제4조제6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2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교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매월 1회 이상)
- 대학 홈페이지 내 시설,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게시판, Q&A 게시판을 설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매월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현업근로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담당 부서, 현업근로자 간 안전 협의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의견 청취(매월 4일) • 의견청취함 (안전관리게시판, Q&A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신속한 대응 및 중대재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추가 피해방지 등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9)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총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총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총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총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 △(경계심각) 총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총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총장(대학의 기관, 조직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총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p>«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p>«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10	10	
계	0	0	10	10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류형국	053-850-3552, gudnr22@cu.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오종철	053-850-3310, otj7221@cu.ac.kr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권현기	053-850-3306, hyungi922@cu.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 없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총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총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효성)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유스티노)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KB손해보험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비고
2023	플러스교육기관 보험	2022-09-30 2023-09-30	1,364	12,194	16,64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재학생 상해	재학생 상해사망 등	10,000	-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5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재학생 치료비	1,000	1,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KB재산 종합보험	2022-03-31 2023-03-30	15,923	313,978	15,923	0	0	0	0	효성캠퍼스
2023	한국교육시 설안전공제	2023-01-01 2023-12-31	3,498	22,190	3,498	0	0	0	0	유스티노캠퍼스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	비고
재산종합위험	-	300,913,569	KB재산종합보험 (효성캠퍼스)
기계위험	-	143,334	
재산종합위험	-	38,780,792	한국교육시설안전공제 (유스티노캠퍼스)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한국교육시 설안전공제	2022-06-01 2023-05-31	1,649	5,795	9,561	0	0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	
장해급여	200,000	-	
요양급여	100,000	-	
장의비	10,000	-	
입원급여	50	-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박성빈	053-850-3962, sbpark@cu.ac.kr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권연숙	053-850-3501, eskwon@cu.ac.kr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3. 02. 16	14:00~15:00	27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행사 전	30분	미정	미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2.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팀장	전산정보팀	팀장	박상수	053-850-2621, dxre@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유정효	053-859-4061, jhyu@cu.ac.kr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현업종사자)	매월	2시간	4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3.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전산정보팀	팀장	박상수	053-850-2621, dxre@cu.ac.kr	협조부서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 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1161명	-
정기 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4652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안전교육 정기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 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약 900명	-
정기 안전교육	1학기/2학기	2회	약 4,5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 안전교육 정기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팀장	박성욱	053-850-2579, foco@cu.ac.kr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행정직	김태연	053-850-3355, lailai1718@cu.ac.kr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안수현	053-850-2576, dks0606@cu.ac.kr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김형근	053-850-2577, chaos7696@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김혜정	053-850-3359, stella1219@cu.ac.kr	협조부서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3.17.~12.31.	2시간	7,614	2,200,000
교직원	3.17.~12.31.	4시간	1,288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직원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폭력예방교육	2	12,663	5,000,000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2	1,551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2	593	6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직원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위직	▪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류형국	053-850-3552, gudnr22@cu.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오종철	053-850-3310, otj7221@cu.ac.kr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권현기	053-850-3306, hyungi922@cu.ac.kr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교육부의 ‘비상대비업무 실무편람’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비상대비업무과정’ 을 활용하여 비상사태 시 주요 행동 및 조치 요령에 대한 전파교육 실시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비상대비업무	1	6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교육부의 ‘비상대비업무 실무편람’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비상대비업무과정’ 을 활용하여 비상사태 시 주요 행동 및 조치 요령에 대한 전파교육 실시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비상대비업무	1	6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법무부 스마일센터	053-745-1295		
대구지방검찰청	053-740-4576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53-743-1295		
해바라기센터	053-556-8117		
경산시청(총무팀)	053-810-5641~4		
경산시청(안전과)	053-811-2231		
하양읍사무소	053-804-7354		
경산소방서	053-812-5119		
하양119안전센터	053-852-0119		
경산경찰서	053-770-0329		
하양파출소	053-853-2112		
경산보건소	053-810-6465		
하양보건지소	053-853-3010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shinmk@cu.ac.kr	캠퍼스관리팀장
		dxer@cu.ac.kr	전산정보팀장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하양119안전센터	053-852-0119		
경산경찰서	053-770-0329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30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53-123		경산지사
경산시청(안전과)	053-811-2231		
경산보건소	053-810-6465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paperlab@cu.ac.kr	건축안전팀장
		dxer@cu.ac.kr	전산정보팀장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경산시청	053-810-5383	catseye@korea.kr	
경산시 보건소	053-810-6343	nurgong@korea.kr	
경상북도청	054-880-4576		
교육부	044-203-7146	moe04@korea.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4430		
경산 세명병원	053-819-8500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대구가톨릭대학교 코로나19 대학일상회복지원 TF팀	053-850-3188	agnes908@cu.ac.kr	소속기관
	053-850-3119	jungej@cu.ac.kr	소속단체, 대학(교)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경산경찰서	053-770-0224		여성청소년수사팀
로템성폭력상담소	053-856-5276	lodem5276@daum.net	
대구여성의전화	053-471-6483	dwhotline6484@hanmail.net	
해바라기센터	053-556-8117	dgonestop112@naver.com	
대구인권사무소	053-212-7000	feeler@humanrights.go.kr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shinmk@cu.ac.kr dxer@cu.ac.kr	총무행정팀장 캠퍼스관리팀장 전산정보팀장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3-810-7564		
경산시청(안전과)	053-811-2231		
대구지방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053-667-6365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 (재활보상부)	053-819-2128		
경산경찰서	053-770-0277		
경산소방서하양119안전 센터	053-852-0119		
경산보건소	053-810-630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4430		
경산 세명병원	053-819-8500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paperlab@cu.ac.kr shinmk@cu.ac.kr	총무행정팀장 건축안전팀장 캠퍼스관리팀장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교육부	044-203-6191		비상안전담당관
국방부	02-748-5769		재난관리지원과
제50보병사단	053-320-0300		
제122보병여단	054-332-2113		
122-2대대	053-856-4091		
하양읍대	053-852-7113		
경산시청(총무팀)	053-810-5641~4		
경산시청(안전과)	053-811-2231		
하양읍사무소	053-804-7354		
경산소방서	053-812-5119		
하양119안전센터	053-852-0119		
경산경찰서	053-770-0329		
하양파출소	053-853-2112		
경산보건소	053-810-6465		
하양보건지소	053-853-3010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053-850-3114	kiki@cu.ac.kr	총무행정팀장
		shinmk@cu.ac.kr	캠퍼스관리팀장
		dxer@cu.ac.kr	전산정보팀장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주관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② 사회재난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박성빈	053-850-3962, sbpark@cu.ac.kr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현장실습지원센터	팀장	권연숙	053-850-3501, eskwon@cu.ac.kr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③ 연구실안전사고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협조부서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팀장	보건진료소	팀장	류상애	053-850-3188, agnes101@cu.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진료소	팀원	정은진	053-850-3119, jungej@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유정효	053-859-4061, jhyu@cu.ac.kr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이한진	053-850-3556, wicked@c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팀원	정성균	053-850-3963, kyun8484@cu.ac.kr		
		팀장	학생상담센터	팀장	박성욱	053-850-2579, foco@cu.ac.kr		
	② 성범죄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김태연	053-850-3355, lailai1718@cu.ac.kr	주관부서	
		팀장	인권센터	팀장	박성욱	053-850-2579, foco@cu.ac.kr		
		팀원	인권센터	행정직	김태연	053-850-3355, lailai1718@cu.ac.kr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안수현	053-850-2576, dks0606@cu.ac.kr		
		팀원	인권센터	상담원	김형근	053-850-2577, chaos7696@c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김경희	053-850-3961, kmkh@cu.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김혜정	053-850-3359, stella1219@cu.ac.kr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팀장	정보보호팀	팀장	김민우	053-859-1341, minu@cu.ac.kr	
		팀장	기숙사	팀장	유정효	053-859-4061, jhyu@cu.ac.kr	
	② 중대재해	팀장	건축안전팀	팀장	한선욱	053-850-3881, paperlab@cu.ac.kr	주관부서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한정훈	053-850-3882, curlyhan84@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다예	053-850-3884, daye1012@cu.ac.kr	
		팀원	건축안전팀	팀원	이건호	053-850-3883, kunho@cu.ac.kr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협조부서
		팀장	캠퍼스관리팀	팀장	신문기	053-850-3691, shinmk@cu.ac.kr	
6. 기타	① 비상사태	팀장	총무행정팀	팀장	이대훈	053-850-3551, kiki@c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행정팀	팀원	류형국	053-850-3552, gudnr22@cu.ac.kr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오종철	053-850-3310, otj7221@cu.ac.kr	협조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권현기	053-850-3306, hyungi922@cu.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1	-	-	1	0.4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29	39	26	31	7	26.4	
		재산피해(백만원)	-	-	-	8	-	136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12	19	8	5	2	9.2
			계	12	19	8	5	2	9.2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	-	16	20	952	197.6	
		인명피해(사망)	-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3	5	4	5	3	4	
		피해자 수	3	5	4	5	6	4.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시설물유지보수사업	10	10	20	40	
		계	10	10	20	40	
	② 사회재난	건물유지보수사업	25	30	70	125	
		계	25	30	70	125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추후 예산 배정 예정	-	-	-	-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교육시설안전인증	-	80	70	150	
		계	-	80	70	150	
	③ 연구실사고	안전관리사업	47.5	189.7	167	404.2	
	계	47.5	189.7	167	404.2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소모품 구입)	25	4.4	3.6	102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홍보물 구입)	-	-	-	-	
		감염병 예방 사업 (방역용 기구 구입)	4	-	-	31	
		계	29	4.4	3.6	134	
4. 범죄	① 일반범죄	직원교육사업	3	2.5	2.5	8	
		관제용역사업	86	86	86	258	
		계	89	88.5	88.5	266	
	②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5	2.2	5	12.2	
	전문가 자문 및 활용	1	0.5	0.5	2		
	계	6	2.7	5.5	14.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0	10	
		계	-	-	10	10	
	②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0	10	
		계	-	-	10	10	
6. 기타	① 비상사태	추후 예산 배정 예정	-	-	-	-	